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30538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전○○
부산 해운대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1. 유○○
포천시 ○○동
2. 우○○
군포시 ○○동
3. 손○○
충북 영동군 ○○읍
4. 정○○
최후주소 창원시 성산구 ○○동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은 4,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우○○는 4,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손○○는 6,997,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정○○는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 우○○,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손○○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손○○는 원고에게 9,99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1. 10. 20.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은 범죄에 이용된 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피고 유○○ 명의의 ○○ 계좌로 460만 원을, 피고 우○○ 명의의 ○○ 계좌로 563만 원을, 피고 손○○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 정○○ 명의의 ○○ 계좌로 480만 원을 각 이체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가.항 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 계좌로 돈을 이체 송금한 당일 성명불상자가 피고들의 위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출금하였고, 현재 피고 유○○의 ○○ 계좌에는 6,000원, 피고 우○○의 ○○ 계좌에는 836,000원, 피고 손○○의 ○○ 계좌에는 3,900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송금하기 이전, 피고 손○○는 2011. 10. 18.경 유○○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유○○에게 위 피고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피고 손○○의 ○○ 계좌는 위 가.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유○○, 우○○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손○○, 정○○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창원○○ ○○지점, 영동○○ 중앙지점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 우○○,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유○○에 대하여는 이체 송금한 460만 원에서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94,000원(= 4,600,000원 - 6,000원), 피고 우○○에 대하여는 이체 송금한 563만 원에서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8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94,000원(= 5,630,000원 - 836,000원)을 각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유○○, 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체 송금한 4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유○○은 4,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 유○○은 4,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 정○○는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손○○가 9,996,100원(= 이체 송금한 10,000,000원 -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3,9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손○○의 계좌에 원고의 돈이 송금된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대부분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위 피고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원고의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것이고 위 피고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송금된 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다음으로 피고 손○○가 원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카드나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행위가 금지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범죄행위가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현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 손○○는 유○○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비록 위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양도가 금지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위 피고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액의 산정

따라서 피고 손○○는 원고에게 6,997,270원(= 원고의 손해액 9,996,100원 × 위 피고의 책임비율 70%)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10. 20.부터 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 우○○, 정○○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천지성